

• 소통의 연수 • 통합의 연수 • 안전한 연수



연수구보



발행 · 편집인: 연수구청장 / 발행처: 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1409호 2023. 10. 10.(화)

【규 칙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83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) ... 1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494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) 7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496호(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) 12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517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14
-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공고 제2023-70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) 29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-81호(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시 고시문) 34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1. 제안이유 ○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○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(제2조) ○ 개관 및 휴관(제3조) ○ 이용대상, 이용시간, 이용료(제4조~제6조) ○ 이용 및 입장의 제한, 행위의 제한(제7조, 제8조) ○ 이용료 징수기준(별표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

2023. 10. 10.

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83 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(이하 “놀이시설”이라 한다)에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.

② 시설장은 놀이시설을 운영·관리하고, 운영요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조(개관 및 휴관) ① 놀이시설의 개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월 1일

2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3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4. 매주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제1호, 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
4.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

제4조(이용대상)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에서 3세부터 12세 이하인 아동으로 한다.

제5조(이용시간) 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이내로 한다.

② 놀이시설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시작 시간부터 마감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놀이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,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제6조(이용료) ①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놀이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이외에 이용자(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인 아동과 그 보호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공하는 식음료, 프로그램 체험비 등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놀이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2. 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
3.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7조(이용 및 입장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용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공공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
3.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
4. 그 밖의 구청장이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, 안전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행위의 제한) ① 이용자는 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
2. 외부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3.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
4. 시설장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

- 5. 고성 · 난무 ·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
- 6.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- 7.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- 8. 놀이시설의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 · 훼손하는 행위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놀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이용료 징수 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이용구분	이용료	비 고
어린이	5,000원	· 이용시간기준: 2시간 -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
동반 보호자	1,000원	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494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5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모범공무원 연 선발인원 확대
-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추천권자 수정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- 제2조(추천) 및 제4조(인사상의특혜) 개정
- 제3조(선발) 개정
- 제5조(상여금지급) 기존 조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:총무과장,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(전화 : 749-7175, FAX : 749-715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연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(붙임 1)

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·과장, 보건소장”을 “구 본청의 실·과장, 직속기관의 장, 사업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연수구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」 제10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”로, “12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자를 ”사람“으로, “직속기관”을 “직속기관, 사업소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”를 “범위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연수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”로, “연수구 산하기관”을 “그 산하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 2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추천) ①모범공무원은 <u>실·과장, 보건소장, 동장, 동료직원</u>이 추천한다.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<u>행적, 직무 내용, 근무조건</u> 및 <u>기타</u>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<u>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</u>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.	제2조(추천) ①----- <u>구 본청의 실·과장, 직속기관의 장, 사업소장</u>--. ②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 ③----- -----. ----- <u>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른</u> ----- -----.
제3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<u>연수구</u>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<u>12명</u> 이내로 선발한다.	제3조(선발) ----- <u>「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」 제10조의2</u>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--- <u>20명</u> -----.
제4조(인사상의 특혜)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<u>자</u> 중 <u>직속기관</u>,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할 수 있다.	제4조(인사상의 특혜) ----- ---<u>사람</u>----- <u>직속기관, 사업소</u>----- ----- -----.

제5조(상여금지급)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,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6조(상여금 지급의 중지)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연수구 및 연수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

제5조(상여금지급) ① -----
----- 범위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-----

-----.

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.

제6조(상여금 지급의 중지) -----
----- 어느 하나에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인천광역시 연수구 -----
----- 그 산하기관 -----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05일

연수구청장

1. 공고명칭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2. 공고기간 : 2023. 10. 05. ~ 2023. 10. 30.(26일간)
3. 공고대상

차량번호	소유자	차 명	운행정지 요청일자	사 용 본 거 지	운행정지 사 유
234서1713 WBACY6108P9P02478	비*****	BMW X6 xDrive40i	2023.09.0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24서6766 WBAHF7108LWW85582	비*****	BMW Z4 sDrive20i M Sport Packaged	2023.09.0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07소4006 WAUZZZF23NN048979	비*****	A6 45 TFSI quattro	2023.09.0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52소2660 WMW61DH08N2P83841	비*****	MINI Cooper S	2023.09.06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251저1106 WBA51AG09NCJ30571	비*****	BMW 530e	2023.09.06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전남32나9400 KNAGD22131A135016	서*	올티마	2023.09.07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07머4802 WMWYX3109L3M24548	비*****	MINI Cooper Countryman(18)	2023.09.11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50수2603 WBAKV2109H0V37897	비*****	BMW X6 xDrive30d	2023.09.12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61라3286 WBAJC3105HWB59603	비*****	BMW 520d	2023.09.12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22로2344 KNALN413BAA016271	E*****	K7	2023.09.12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20두3992 WBAKS8104J0Y84605	비*****	BMW X5 M50d	2023.09.13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00버8666 WBS81CH09MCF28545	비*****	BMW M5 Competition Package	2023.09.13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73구5645 WBA7T4107MCG47706	비*****	BMW 740Li xDrive	2023.09.13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76서2718 WBAGT8100N9M10509	비*****	BMW X6 xDrive30d	2023.09.19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
97우1970 KNCS0362TS123457	이**	와이드볼고링캡	2023.09.21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69무4898 KMXKPU1CPSU138150	이**	겔로퍼	2023.09.21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30마5002 WBA5N2107HG269002	비*****	BMW Gran Turismo EfficientDynamics Edition	2023.09.21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50모4884 WMWLN5103K2H74759	비*****	MINI Cooper Clubman	2023.09.21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47구3509 WBAJC3108HG856898	비*****	BMW 520d	2023.09.21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294라2868 WBAJY810XNCJ18022	비*****	BMW 620d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255노2695 WBA11ES01MWX24436	비*****	BMW 523d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24더4892 ZAM56XPG1J1288019	비*****	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350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58마1806 W1KZF0FB6MA877905	비*****	Mercedes-Benz E220 d 4MATIC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25고0619 WBA5A7100GG297991	비*****	BMW 528i xDrive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06무2264 WBAJC3104HG923304	비*****	BMW 520d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146나7146 VR7ACYHZRML000606	비*****	Citroen C5 AirCross 1.5 BlueHDi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358다6558 WDDZF0EB1KA500008	윤**	E220 d	2023.09.25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45부8588 SCA664S04AUX34588	비*****	롤스로이스 고스트	2023.09.26.	인천광역시 연수구	소유자 요청

4. 공고내용

-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동법 제81조(벌칙)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는 동법 제82조(벌칙)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동법 제80조(벌칙)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(☎ 032-749-8801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1517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10. 10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자치법규명 :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2. 개정이유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(2023. 12. 31.)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(5년)

나. 상위법령, 인용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다. 조문 내용에 맞게 조문 제목 및 순서 정비

라. 한자어,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(안 제25조)

○ (현재) 2023. 12. 31. → (개정) 2028. 12. 31.

나. 상위법령, 인용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(안 제19조, 제23조)

다. 정식 명칭 및 약칭 사용 정비 (안 제5조, 제22조제2항·제4항, 제6조 제3항·제4항)

라. 일반적인 위원회 조문 순서에 따라 내용 정비 (안 제6조제1항·제5항, 제6조의4, 제7조)

마. 조문 순서 변경 (안 제24조~제25조)

바. 그 밖에 한자어, 띄어쓰기, 용어 등 정비 (안 제2조~제3조, 제6조, 제6조의3~제6조의6, 제8조~제9조, 제11조~제13조, 제17조, 제22조, 제24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10. 30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(참조 복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6층 복지정책과
- 연락처 : 전화 032-749-7633, FAX 032-749-7629
- E-mail : bienne99@korea.kr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5. 첨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 를 “(정의)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사회복지 사업” 을 “사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말한다..” 를 “말한다.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” 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8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구금고” 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 금고” 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” 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 및 운영)” 을 “(위원회 설치 및 구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하여” 를 “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” 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” 을 “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” 을 “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” 으로, “1이상” 을 “1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5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“전임자”를 “전임자 임기”로 한다.

제6조의4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회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.

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의6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대한복지지원”을 “대한 복지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그 밖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

제11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포함한다.”를 “포함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단체” 를 “노인회 및 단체” 로, “2월이내” 를 “2개월 이내” 로 한다.

제13조제5호 중 “기타 자활사업” 을 “자활사업” 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제2호 중 “6월이상” 을 각각 “6개월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영 제26조의4제4호” 를 “영 제26조의4제7호” 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” 를 “회계연도” 로, “출납 폐쇄후” 를 “출납폐쇄 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 의회” 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” 를 “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” 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5이하” 을 “5 이내” 로 한다.

제23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」” 을 “「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 으로 한다.

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4조로 한다.

제24조(중전의 제25조)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제25조(중전의 제24조) 중 “조례” 를 “조례의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(중전의 제25조)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 -----.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 사업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자활사업”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.	3. ----- ----- ----- 말한다.
4. 삭 제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“차상위계층“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6. 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----- ----- -----.
7. · 8. (생 략)	7. · 8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재원)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,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.	제3조(기금의 재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기타 수입금

제5조(기금의 관리운용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,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·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8. 그 밖의 --

제5조(기금의 관리운용) ① -----
-----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-----
-----.

② -----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
-----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-----
-----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
5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.

제6조의3(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의4(회의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-----
-----.

④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-----

----- 1 이상 -----
-----.

<삭제>

제6조의3(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-----

----- 전
임자 임기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4(회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의 회의-----

-----.

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

제6조의5(위원의 제척) <u>위원회의</u> <u>위원</u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 1. ~ 4. (생략) 제6조의6(수당) 위촉위원이 <u>위원</u> <u>회</u>에 참석한 경우에는 「인천광 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<u>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<u>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</u> <u>사항</u> 2. <u>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</u> <u>변경에 관한 사항</u> 3. <u>기금결산에 관한 사항</u> 4. <u>기금운용의 성과분석</u> 5. <u>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</u> <u>성 검토 및 승인사항</u> 6. <u>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<5호</u> <u>에서 이동 2014.7.28.></u>	<u>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</u> <u>되,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</u> <u>다.</u> 제6조의5(위원의 제척)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6(수당) ----- <u>위원회</u> <u>의 회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
---	---

제8조(대상사업) 제4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삭 제	
3. 저소득 장애인, 노인, 소년소 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, 국 가보훈대상자, 저소득층 등 취 약계층에 <u>대한복지지원</u> 사업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한 복지지원</u> -----
4. 5. (생 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6. 기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<u>필요한 비용</u>	6. 그 밖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 <u>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 한 비용</u>
제9조(지원대상) 제8조에 따라 기 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국에 펼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.	제9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기타</u>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 는 사업 주체	8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.
제11조(대상사업) 제4조제1항제3 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1조(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	3. -----

위하여 교양강좌, 오락, <u>기타</u>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 4. 노인회(구지회, 경로당을 <u>포함한다</u>.)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5. ~ 7. (생략) 8. <u>기타</u>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2조(지원 대상 등) ① (생략)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·2. (생략) 3. <u>기타</u>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을 지원받은 <u>단체</u>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<u>2월이내</u>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제13조(사업의 범위)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4. ----- <u>포함한다</u>----- 5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그 밖에</u> ----- --- 제12조(지원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③ ----- <u>노인회 및 단체</u>----- <u>2개월 이내</u>----- ----- -----. 제13조(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.
---	---
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기타 자활사업</u> 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	5. <u>자활사업</u> -----
6. ~ 15. (생략)	6. ~ 15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~ ③ (생략)	제17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	④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<u>6월이상</u>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<u>6월이상</u>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	2. ----- ----- <u>6개월 이상</u> ----- ----- <u>6개월 이상</u>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신용보증)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	제19조(신용보증) 영 제26조의4제7호-----
제22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 등) ① 구청장은 <u>회계년도</u> 마다	제22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 등) ① ----- <u>회계연도</u> -----

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
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
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
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
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
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
요항목(분야, 부문, 정책사업)
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
목(단위사업, 세부사업, 목)의
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
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
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
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
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
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
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「인천
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」
을 준용한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----- 출납폐
쇄 후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인천광역시 연
수구의회---.

③ -----

범위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변경할 때에는 미리
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-----
-----.
----- 5 이내-----

-.

제23조(준용) -----
----- 「인천
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
규칙」---.

제25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---

--.

제25조(존속기한) 기금은 <u>2023년</u> <u>12월 31일</u> 까지 존속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 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24조(존속기한) ---- <u>2028년 12</u> <u>월 31일</u> ----- .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를 개정하는 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보건소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징수 기준을 『국민건강보험법』 근거로 현실화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보건소 수수료 징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 비용 징수 기준 명확화 (제6조 제3항 신설)
-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(제9조 제2항)
- 용어 순화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 사용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3. 10. 26(목)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보건행정과 경유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사항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(단체)은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(☎749-803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마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13(청학동, 연수구보건소)
- 연 락 처 : 전화 032-749-8031
- E- mail : goyoungsil@korea.kr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>

바. 첨부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진료비)”를 “(정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진료비는”을 “이 조례에서 “진료비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, 징수”를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”를 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”로, “10원미만은 절사한다”를 “10원 미만은 버린다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동약가기준액표”를 “급여목록표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타 법령에 의한 수가)”를 “(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”을 “「의료급여법」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적용 한다”를 “적용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기타수가)”를 “(그 밖의 수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.

②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보건소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.

③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, 100원 미만은 버린다.

제7조제2항 중 “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”을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“별표 1“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2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)”을 “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건소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(이하 “보건소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타 법령에 의거”를 “다른 법령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 및 예방접종.

제9조제2항제7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9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가.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
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다. 국가(독립)유공자 및 그 유족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,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2세환자,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,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

라.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

마.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
제10조 중 “수수료등”을 “수수료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10.05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
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관련지번	신규도로명주소
2019.03.15	송도미래로 시작점에서 110m 떨어진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송도동 203-5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11번길 27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(☎749-7602)에 문의
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▶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등)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(도로명의 변경 절차) 및 제26조(건물번호의 변경·폐지 절차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10.05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
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관련지번	신규도로명주소
2019.03.15	송도미래로 시작점에서 120m 떨어진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송도동 213-9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12번길 24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(☎749-7602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▶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등)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(도로명의 변경 절차) 및 제26조(건물번호의 변경·폐지 절차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10.05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
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관련지번	신규도로명주소
2012.05.22	첨단산업클러스터 단지 반영	송도동 209-2	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 104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(☎749-7602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▶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등)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(도로명의 변경 절차) 및 제26조(건물번호의 변경·폐지 절차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0. 05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폐지된 도로명 주소

순번	지번	도로명	사유
1	송도동 209-2	넘말로 89번길 11	건물 멸실 확인